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
----------	----

제출년월일 : 1998. 9. 17.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표준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휴가관련 복무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2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 휴가를 허가토록 하던 것을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23조 제6항).

나.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에 대하여 7일이내의 승선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던 것을 적용대상 공무원이 없어 이를 폐지함.

3. 관계법령

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표준지침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제6항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7항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은 7일 이내 승선후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3조(특별휴가) ----- ----- -----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p> <p>(삭 제)</p>